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4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30.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 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됨¹⁾.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데,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관한 재정수요를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음²⁾).

-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³⁾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반영항목으로 ①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②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③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④ 자체수입 확충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체노력 인센티브로 교부하고 있음.

2026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을 보면 자체노력에 따른 수요는 총 4,644

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억원이 증액되고, 자체노력 수입은 총 14억원이 감액되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체노력에 따라 교부금 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일정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체노력수요 및 자체노력수입 산정내역]

(단위: 천원)

시도	학교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외부 교육 투자 유치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자체노력 수입
	학교통폐합	신설개편	통합운영 학교지원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이·불용률	상반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서울	-	-	-	-	7,867,961	△15,000,000	2,000,000	-	△605,971
부산	12,000,000	8,000,000	-	-	5,014,199	△8,700,000	2,000,000	-	-
대구	20,000,000	-	-	-	4,982,487	9,000,000	2,000,000	-	-
인천	-	-	-	11,195,749	3,725,048	1,1500,000	2,000,000	-	△63,938
광주	-	-	-	412,917	10,450,863	9,000,000	2,000,000	-	△103,197
대전	-	-	-	3,164,416	3,711,770	9,000,000	2,000,000	-	-
울산	-	-	-	-	2,078,172	8,000,000	2,000,000	-	△25,570
세종	-	-	-	-	593,704	8,000,000	2,000,000	-	△15,737
경기	8,000,000	5,000,000	-	-	5,639,266	△14,000,000	2,000,000	-	-
강원	4,000,000	-	-	-	3,679,704	9,000,000	2,000,000	-	△408,851
충북	6,000,000	-	-	-	3,973,441	4,200,000	2,000,000	-	-
충남	22,000,000	4,000,000	-	432,171	729,643	11,500,000	2,000,000	1,000,000	-
전북	47,000,000	3,000,000	-	-	2,427,223	2,500,000	2,000,000	1,000,000	△24,318
전남	12,000,000	-	9,000,000	-	2,708,780	6,300,000	2,000,000	-	△118,586
경북	82,000,000	5,000,000	-	-	454,314	6,300,000	2,000,000	-	△45,148
경남	35,000,000	6,000,000	-	4,815,331	2,808,910	5,000,000	2,000,000	-	
합계	248,000,000	31,000,000	9,000,000	20,020,584	60,845,485	61,600,000	32,000,000	2,000,000	△141,316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도 자체노력 반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⁴⁾.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인센티브 산정 근거 법률 상향 취지에 동감한다는 의견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경우 자체 징수권한이 없고 세입 재원의 90%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재정운영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률로

4)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명문화할 실익이 크지 않고, 관련 내용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 상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 참고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4]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및 학생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분교장의 초과 학생 수
나. 삭제 <2024. 11. 5>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중 외부 유치재원 비율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중 외부 유치재원 비율의 증가율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전전년도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비율

비고

1.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분교장 개편"이란 다른 학교로의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통학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합·운영"이란 학교 수를 줄이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학교 이상의 학교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목의 산정기준란 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란 통폐합 전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에 따라 정하는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학교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수 중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학생 수의 합계를 말한다.
5. 다목에서 "외부 유치재원"이란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을 말한다.
6. 라목의 산정기준란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말한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	1)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2) 전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